

발기인총회의사록

2017년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개포동, 서울강남우체국빌딩)에서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명	주식총수	60,000주
출석주주수	1명	인수주식수	60,000주

발기인 대표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진은 위와 같이 상법 소정의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주주전원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한 즉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 바, 발기인 전원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감사 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황상민
기타비상무이사	이수민
기타비상무이사	김보라
감사	갈민수

제3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의 조사 보고를 발기인 아닌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여야 함을 설명하자 전원 이의 없이 아래 임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사내이사	황상민
기타비상무이사	이수민
기타비상무이사	김보라
감 사	갈민수

위 감사는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조사에 착수하다.

의장은 위 조사보고를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휴회한 후 속회하다.
검사인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목적인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폐회시각은 11시)

위 의사의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7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진



조사 보고서

2017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총회에
서 본인은 검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상법 제 2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조사 사항

1.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정확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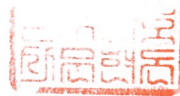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 이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주 (액면주식 1주의 금액 금5,000원)로 그 인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보통주식 60,000주 2017년 11월 23일 인수완료

2. 인수 주식수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60,000주에 대하여 금300,000,000원의 납입금이
2017년 11월 23일 납입이 완료되었음은 우리은행 서울우암지점이 발행한 잔고
증명에 의하여 명확함.



3. 현물출자 기타 조사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기타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상법제 290조 규정사항
을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정확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음.

4.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 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17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서울사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내이사 황상민



기타비상무이사 이수민



기타비상무이사 김보라



감 사 갈민수

